

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

● 산업자원부 ●

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101 호

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05. 12. .
산업자원부장관

1. 제정배경

○ 액화석유가스소비자 가격의 4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, 소형용기를 통한 낙후된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액화석유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소로부터 용기(밸크로리 포함) 배송 및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

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배송센터를 도입·운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업소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로부터 용기(밸크로리 포함) 배송 및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배송센터를 도입함(안 제2조 제1호)

나.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저장능력 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공동저장시설외의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

저장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을 250kg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함. 다만, 500kg초과 1톤 이하인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제1항 및 제4항)

다. 사업자의 업무경감 및 용기 상호표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기의 외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가스공급자 상호 대신 배송센터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제3항)

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 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(이하 “배송센터”라 한다)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 실시의 타당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배송센터”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 석유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자동 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 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행위(이하 “배송”이라 한다)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액화석 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 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.
2. “시범사업자”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배 송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.
3. “배송위탁 사업자”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배송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 시하는 안전점검 등을 배송센터에 위탁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 유가스판매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① 시범사업자 및 시범배송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.

| 시범사업자명 | 소재지 | 시범배송지역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서해LP충전소 |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12-38 | 충청남도 당진군 |
| 영동가스충전소 |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산42-1 | 강원도 속초시 |
| 영진에너지 |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9-3 | 전라남도 영광군 |

② 이 고시는 시범사업자, 배송위탁사업자 및 시범배송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배송센터 신고 등)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배송센터 상호명 및 액화석유가스의 배송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센터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배송위탁 사업자 현황

제5조(시범사업자 지정의 취소) 산업자원부장

관 또는 허가관청은 시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받은 때
2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범사업자로 지정 받은 때
3.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
4. 사업계획서를 현저히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배송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

제6조(위탁계약 체결) 시범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소비자에게 배송하고자 할 때에는 배송위탁사업자와 배송 및 책임관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조(저장능력 등의 적용)
① 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는 규칙 별표3제1호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시설에 한해 저장능력에 관계없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다.

②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시범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배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5 제1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운반자동차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

③ 시범사업자가 배송하는 용기의 외면에는 규칙 제43조 및 별표17 제2호마목(1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가스공급자 상호 대신 배송 센터의 상호를 표시할 수 있다.

④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 사용자는 영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장시설외의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이 500kg를 초과하는 경

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이 500kg초과 1톤이하인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의 허가 의제)
① 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 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 별표3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9조(배송 수수료) 배송 수수료는 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기간)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관련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.

제3조(시범사업 개시 및 보고) 시범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 후 30일이내에 시범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, 시범사업 개시 일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험가입) 시범사업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시범사업에 적합한 보험으로 갱신하여야 한다.

[별지 서식]

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|
| 액화석유가스배송센터 설치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서 | 처리기간 | | |
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 | 즉시 | | |
| 신고인 배송센터 | ①상호 | | | | |
| | ②성명(대표자) | ③주민등록번호 | | | |
| | ④사무소소재지 | (전화 :) | | | |
| | ⑤상호 | ⑥허가종류 | ⑦허가번호 및 연월일 | | |
| | ⑧성명(대표자) | | | | |
| | ⑨소재지 | (전화 :) | | | |
| | ⑩배송지역 | | | | |
| | <p>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 호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| | | | |
| |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
| | <p>시 · 도 · 지 · 사 귀하</p> <p>시장 · 군수 · 구청장</p> | | | | |
| <p>구비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고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사업계획서 1부. 나. 배송위탁 사업자 현황 1부 2. 변경신고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배송센터 상호명(변경된 경우 한함) 1부. 나. 배송위탁 사업자 현황(변경된 경우 한함) 1부. | | | | | |